## 예 산 총 칙

2016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66,230,404	139,986,912
일반회계		3,755,529,465	112,665,884
특별회계		910,700,939	27,321,028
	공기업특별회계	467, 171, 119	14,015,1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67, 171, 119	14,015,134
	기타특별회계	443,529,820	13,305,895
	소방특별회계	154, 134, 879	4,624,0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7,144,292	6,214,329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691,415	380,74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1,300,360	939,0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60,000	277,800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8,998,874	869,966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516,893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6,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